



에너지 절약계획서 건물대상 권



여러분의엽서
메일을 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저는 목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나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다 제가 직접 '배기열회수기' 라는 것을 제작해 설치해본 결과 아주 큰 효과가 있어서 실용신안 출원 중입니다. 저희 업소 말고 온수보일러나 스팀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설치한다면 아주 큰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창업을 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기기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배기열회수기'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아마 폐열회수열교환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폐열회수열교환기는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작하신 시스템이 자금지원대상시설인 폐열회수열교환기일 경우는 자금지원대상시설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금

은 구입자의 구입비용 용자 지원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창업자금이란 시설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중 생산시설자금은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효율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효율인증은 국가에서 공인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정부가 공인에너지절약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인시험기관 및 연구소 등의 절약성능 검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남양주 진접읍에서 아파트(775세대) 전기공사 시공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당 현장은 최초 2003년 12월 말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04년 5월 및 2005년에 부지 면적변경 내용으로 인해 몇 차례의 변경승인 후 별도 사업승인조건상 세대내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에 대해 조건사항 없이 현재 2006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

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에 있어서 주차장 및 공용부위는 고효율 조명기기인 FLR 32W 램프 및 전자식 안정기를 시공하였으나 세대내부는 모델하우스 설계 기준인 PL36W, 55W를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 단위세대 내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이 의무사항 또는 권장사항입니까?
2. 당 현장이 세대 내에 고효율 조명기기인 FPL 32W 임팩트 형 형광램프를 사용해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하십니까?
3. 당 현장의 사업승인 일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내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사항입니까?

<답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명설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용도 : 업무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각 면적 : 업무시설-1700m², 교육시설-1500m² 주차장 및 공용시설-1700m²

이 건물에 에너지절약계획서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구분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공용시설은 각 해당용도인 업무와 교육시설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과 교육시설 각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 이 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외부 창외 단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 현장은 아파트 915세대 규모이고 여기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499m²인 현장입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외벽의 창에 적용되는 단열기준이 영 제91조 1항 규정에 의한 500m²미만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규정이거나 완하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동법 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1항을 적용하여 이에 명시된 별

표4에 규정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단열기준이라고 말하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의 내용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m² 이상인 건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므로 동일한 단열기준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다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료전환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중 B-C유에서 LNG 로의 연료전환 부분입니다.

현재 연료전환을 통한 (B-C유에서 LNG)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에 등록을 위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감축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시 단순히 사업장 내의 연료전환에 의해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 인지, 아니면 석유의 채굴, 가스의 채굴 및 이송 과정에서의 누출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등록사업에 등록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은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그러나 CDM에 등록된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방법론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료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도 CDM방법론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스채취, 석유채굴 등에 의한 요인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